

윤리 경영 정책

제정일: 2014.03.15.

개정일: 2026.04.28.

승인기구: 최고경영자

롯데관광개발은 '감동주는 경영', '공익에 봉사하는 경영', '미래를 여는 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주주, 사회 및 국가, 그리고 임직원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금지와 자부심,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1. 적용범위

본 정책은 롯데관광개발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과 자회사 및 합작법인에 속한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나아가 본 정책은 당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

2. 목표관리

경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 주요 윤리 이슈에 대해 2030년까지 달성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한다. 목표달성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ISO37001 인증 사업장 비율 100% 달성
- 윤리 위반 제보 접수 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100% 달성
- 임직원 윤리교육 100% 달성

3. 역할 및 책임

1)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

윤리경영 정책 개정, 윤리 분야 법률 및 규제 대응, 신고 내역, 윤리경영 추진성과 등을 검토 및 승인한다.

2) 윤리 경영 운영 부서

윤리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임직원이 본 윤리 정책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4. 윤리 경영 실천 지침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가.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이해상충행위 금지

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나.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다.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라. 임직원의 친인척이 회사의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 윤리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직무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이해관계 상충을 피해야 한다.

마. 재직 중 부정한 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3) 회사자산 및 정보 보호

가.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는다.

나.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 규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다. 회사자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및 유용, 기물유출, 업무 외 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모든 거래와 재무 기록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마.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등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한다.

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관련 법규 및 회사방침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아.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4)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가.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업무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법규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직간접 선물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협력사 등 업무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법규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직간접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아야 한다.

다.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된다.

5) 정치 후원금 및 기부금

가. 모든 임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후원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나. 개인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 명칭이나 자산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직원의 신분을 내세우는 것도 금지된다. 정치적 기부나 후원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이뤄지더라도, 관련 활동은 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명의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다. 임직원은 자유롭게 기부나 후원을 할 수 있으나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패를 조장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6) 구성원의 존중과 성희롱 방지

가. 동료 및 상하 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

나. 성,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굴욕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폭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자금세탁 방지

가. 범죄, 탈세, 부패 등 불법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금지한다.

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사기 금지

가. 허위 보고, 사실 은폐, 부정직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자금 유용, 횡령, 위조 등 회사 및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사기 행위 또는 사기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련 부서 또는 회사의 신고 채널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5. 윤리 및 반부패 예방활동

1) 윤리교육

회사는 윤리경영 문화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 반부패 및 공정거래 관련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

2) 윤리 리스크 관리

회사는 윤리 경영과 관련된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사업 활동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한다. 또한 윤리 경영 관련 정책과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부패 및 비윤리 행위 발생을 예방한다.

6. 윤리 및 반부패 위반 행위 제보 및 구제

1) 윤리 위반 행위 정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 신고하고 회사는 구제절차를 작동한다.

- 뇌물,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 회사 자산의 부정 사용 또는 유용
- 이해상충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조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2) 신고 방법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윤리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의 신고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보호하고 신고자, 조사 협조자 및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도 금지한다.

- 직접 신고, 핫라인 이메일, 유선전화, 제안함 등

3) 처리 절차

제보가 접수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고나 제보가 없더라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제보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철저히 보호한다. 인권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7. 검토 주기 및 공시

본 정책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또한 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정책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정책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승인기구의 승인을 통해 개정한다.

8. 부칙

본 정책은 회사의 ESG 경영을 위한 최상위 정책으로 회사의 제규정은 본 정책의 취지와 방향성에 부합되도록 운영 및 관리하며 기존 사규(규정, 지침, 매뉴얼 등)가 본 정책과 상충하는 경우 본 정책을 하위 사규의 해석 기준으로 활용한다. 각 사규 관리 부서는 소관 사규를 본 정책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보완 및 개정한다.